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세미나 자료집

SAd.a.8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1997. 2. 27, 홍사단 강당

주최: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주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02) 365-4016 FAX. 02) 365-4017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세미나 자료집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1997. 2. 27, 흥사단 강당

주최: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주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20-0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한국기독교서회문제연구원  
☎ 02) 365-4016 FAX. 02) 365-4017

##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 세미나

주제 :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부제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 ■ 진행 순서 ■

- ▶ 인사 : 김종길 시민연대 공동대표
- ▶ 기조발제 :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윤정옥 대표
- ▶ "정신대 할머니 온겨레 돋기 운동에 관하여"
  - 나는 왜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
  - 손다은 (초등학교 학생)
  - 김기홍 (영남대학 기독학생회 SCA)
  - 최이례네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홍순관 (대지의 눈물 공연)
-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 이동우 대표 (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대표)
  - 이파경 의원
  - 도츠카 애츠로 변호사
  - 박원순 변호사
- ▶ 질의, 답변
- ▶ 알림

## 일본군 “위안부”문제 여기에 서 있다.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금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은 7명의 한국 전 일본군 ‘위안부’에게 국민기금과 정부의 의료복지기금을 전달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게 미리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알려온 날짜는 1월 10일이고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측이 물어보아도 시간과 장소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비밀리에 지급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정부에 사후 통첩한 것이었다.

2월 초순 일본방문단<sup>1)</sup> 중 네 사람이 관할 부서인 내각외정심의실(內閣外政審議室)을 찾아가 우메다 구니오(梅田邦夫 외정심의관)를 만났다. 이 사람은 작년 10월에 정대협사무실을 찾아와 당시 정신대 할머니 사이에 유포되어 있던 소문 “국민기금200만엔 말고도 정부의 의료복지기금 300만 엔을 현금으로 준다”는 말을 부인했다. 정부의 의료복지기금 300만 엔은 “절대로”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2월에 찾아갔을 때에 우메다 외정심의관의 대답은 이러했다. 정부가 지불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와 대화를 추진하는 회”에서 지불할 것이라고. “아시아와 대화를 추진하는 회”는 작년 12월 만들어졌다면서 조직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이 어디있는지 대표가 누구인지 심의실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다. 심의실에서는 국민기금이 건네진다는 것을 한국정부와 같은 날 1월 10일 알았다고 했다. 우리 쪽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에는 국민기금사람이 하시모토수상의 편지를 가지고 이미 서울

1) 방일 기간; 97년 2월3일 - 2월5 일

일본방문단 구성원 :

국회의원 : 신한국당의원 : 안상수, 민주당의원 : 이미경, 이부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윤정옥, 지은희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 윤영애, 장완익

태평양 전쟁희생자유족회 : 김성수, 이희자

에 와 있었는데”라고 물으니 얼굴이 빨개서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민기금을 받아서는 안되는 이유는 일본정부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배상금을 내지 않으려고 일본국민으로 하여금 동정금을 내게 한데 있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조직을 생각해낸 것도 그 조직의 운영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인 것이다. 일본정부는 한일 간의 모든 배상은 1965년에 처리했다는 입장에서 전쟁범죄의 희생자인 피해자 배상금이 아닌 동정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셨나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고 국제법에 의하면 피해자 개인이 가해국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유린에 속하는 이러한 범죄에는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국가간의 문제와는 별도로 피해자 개인의 권리는 살아있고 시효가 없다.

1993년에 네덜란드의 반 보벤(Theo van Boven)박사가, 1994년에 국제법률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 I.C.J)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의 세계여성대회가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중대한 인권에 반하는 죄로 일본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 회복을 위해 사죄와 배상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1996년 4월 UN의 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Coomaraswamy)특별조사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쿠특별조사관은 일본군 ‘위안부’를 군대 성노예였다고 규정짓고 국제법상 여러 가지 인권을 위반했으므로 명예와 존엄성회복을 위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나라의 선준영제네바대사는 일본이 쿠특별조사관의 권고를 받아드릴 것을 강하게 발언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노동연맹(I.L.O)에서 위안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생활은 일본의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서 새로운 미국의 일본 731부대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련한 전쟁범죄자 16명에 대한 미국 입국 불허조치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정죄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해 왔다.

지금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진상을 알 수 없다. 일본이 패전직후 문서를 불살랐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 희생된 전체 수를 10만에서 20만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았고 혹독하게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군대가 진주해 들어갈 때 그곳에 있던 군대가 상황에 따라 그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삼아 일을 저질렀다. 그러나 대만과 우리 나라 경우는 군 수뇌부가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법령에 의해서 행해졌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사실은 ‘위안부’가 싸움터로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조선, 일본, 만주등의 광산이나 공사장에도 많이 끌려갔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고급 관리중에는 지금도 당시에 조선 여성들 끌어간 사람은 일본의 경찰, 군인, 현병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 사실 끌어간 것은 일본인 뿐 아니라 조선인 업자, 면서기, 이장, 순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말단 조선 공무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이들은 동족을 배신한 책임은 추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제도 속에서 말단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국과 같은 서구나라와 달리 일본은 말단 현병, 경찰과 관리의 반수를 조선인으로 충당하고 그 조선인으로 하여금 동족을 배반하게 하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침략정책이 잔인했고 그 중에서도 군 ‘위안부’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는데 지금도 일본은 반성할 줄 모른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당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육체적인 후유증 보다 더 심한 병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얻은 병인 것 같다. 피해자들은 속아서 혹은 폭력으로 붙잡힌 순간부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쓰다가 버릴 소모품, 군수품으로 취급되었다. 일본군의(軍醫) 아소 테츠오(麻生徹夫)는 위안소를 위생적인 공동변소라고 말했다. 중국침략을 결정한 후 일본군은 군인에게 성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 조선에서 성경험이 없는 미혼녀를 데려가기로 했다.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최대한 일본군의 성욕처리를 시킨 것이다. 한 사람에게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이 줄을 섰고 지역에 따라서는 강제로 몰편 주사를 놓았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말한다. 자기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피해자들은 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패전직후에 일본군은 ‘위안부’들을 버리거나 자기들과 함께 자결하기를 강요하거나 학살하였다. 귀국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전체의 몇퍼센트 되는지 알길이 없다. 현재 남한에는 160명 정도가 있고 북한에는 130여명이 있는 줄 안다. 남한에는 등록하

지 않고 생존해 있는 할머니가 더 많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보다 비교가 안되게 더 많은 수가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것이다. 16, 17세에 끌려가기가 막히는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라. 그들도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있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판단력이 약한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국민기금의 성질을 왜곡하여 받겠금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해방후 50여년이 지난 후, 감언이설로 어린 여성들 끌고 간 일제 시대의 간악했던 짓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반성을 모르는 일본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같은 짓을 되풀이 할 가능성은 얼마던지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 일본이 바라는 것은 전쟁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기금을 받게 함으로써 전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아 세계의 압력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해 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일본군은 중국침략을 결정한 후 우리 나라를 병참화하고 모든 자연자원을 철저히 수탈해 갔다. 그리고 남성을 노동력으로 연행하면서 여성을 일본군인의 성욕처리 수단으로 작정한 것이다. 이 정책은 직접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동시에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통치하기 쉽게끔 피지배국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책, 민족말살정책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였다. 필자는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일본의 침략통치의 끝간데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피해자 개인차원만으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민족적 문제로 역사적 문제로 파악해야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쉽게 1945년을 해방의 해라고 말한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줄 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독립된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침략정치의 골수라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하겠다. 그 길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해자를 다시 속여서 배상금이 아닌 동정금을 받게 하려는 그 손을 뿌리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죄를 인정 하지 않는 동정금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자원해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요 일본은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에서 동정금인 일본의 ‘국민기금’이 아니라 정성껏 모은 우리의 성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정대협이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연대”(시민연대)를 만들어 모금을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의미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일본,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을 뿌리치는 것이다. 또 중요한 뜻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금에 참여하므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에게서 해방하자는 뜻이다> 우리의 말과 이름을 없애고 총독부를 짓고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일본, 우리의 강토와 우리의 심신을 짓밟으려면 일본의 50여년전에 폐전했다. 우리는 정말 독립한 자유인이라는 것을 자타에게 알리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시민모금을 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 독립된 자유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일본과 동등한 선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의 이 운동이 열매를 맺는 운동이 되기를 깊이 바라마지 않는다.

▶ 나는 왜·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저의 작은 정성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손다은 (초등학교 학생)

저는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 살고 있는 손다은입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중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너무 보잘 것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다루는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정성이 할머니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제가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 해 말씀이었습니다. 우연히 한겨레 21을 보고 있는 엄마 곁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기사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신대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정신대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신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정신대란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제 침략시기에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저들의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이렇게 속거나 혹은 강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온 할머니들도 병에 시달리거나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같은 동포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초등학교 때

일본을 끌려갔다고 하니 바로 내 나이 무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껏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렇잖아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화가 나 있는 참인데, 참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뻔뻔스런 나라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속히 일본은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정신대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 끊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21에 실린 기사를 읽으며 할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으신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으니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이웃에 사는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제가 언니의 교복을 물려입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맞추려고 모아 두었던 돈의 일부를 보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용돈을 아껴서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비록 작은 것지만 이 작은 정성과 마음이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전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겪으신 고난과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더 많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꼭 이 문제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나는 왜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우리는 화요일에 모입니다.

김기홍(영남대 4학년 기독학생회 회원)

저희 영남대 기독학생회는 96년 2학기부터 학교안에서 정신대 할머니 돋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하시듯이, 우리도 매주 화요일 모여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고, 할머니들의 어려운 생활을 돋는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할머니들의 종언을 실은 대자보도 붙이고, 매주 500장의 유인물을 만들어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날만큼은 평소 활동에 소극적이던 회원들도 아주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 만원짜리 를 꺼내면서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모두들 감동을 받았고, 서툰 영어로 미국인 강사를 설득해서 모금에 동참하게 한 일도 우리 능력밖의 일이었습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학우들을 따라다니며 유인물을 나눠주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때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요모임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우리 모임이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았고, 그 속에서 회원들은 이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의 아픔이 조금씩 몸으로 전해져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와,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시는 할머니들의 피맺힌 목소리, 또 그 걸 전하려고 하지만 그냥 스쳐지나가는 많은 학우들을 눈으로 보면서 이 일은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며, 기독인으로서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임을 가슴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접한 故 문옥주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또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경을 헤매면서도 누구의 정성스런 간병조차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이 계셨던 할머니가 고통속에 계셨는데도 우린 몰랐고, 돌 아가신 뒤에 할머니의 넋을 떠나보내는 자리에도 우린 가보지 못했습니다.

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활동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반성을 하고, 할머니들을 돋는 일에 더 많은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대구 백화점 앞 번화가에는 많은 성가대들이 나와 예수탄생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피맺힌 한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제대로 서있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일본정부는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즉각 실시하라'는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우리들만의 열기를 느끼면서 추위를 잊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영남대 신입생 새로 배움터에서는 여학생회와 함께 정대협에서 제공해준 슬라이드를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이 켜지고 많은 신입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것을보고, 우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정부가 너무너무 맙다', '이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97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에 계신 정신대 할머니들을 찾아뵐 생각입니다. 할머니 다섯분이 우리고장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찾아가뵙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일회적인 것으로 그칠 땐 할머니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어렵게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직접 돌봐 드리는 것입니다. 일본 민간기금측은 6년이 넘게 할머니들에게 안부전화를 했다는데, 아무것도 하지않은 우리가 무슨 얘긴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할머니들을 돋는 모임들이 모여서 좀더 조직적이고, 폭넓은 행사를 고민하는 일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3녀 1남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딸 셋을 낳는 동안 아들이 없어서 시어머니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나봅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고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외삼촌들이 애를 지우라고 종용했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일꺼라고 확신하셨답니다. 그 믿음덕

분에 제가 태어났지만 고생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어릴적 기억으로 밤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했던 할머니가 너무 미웠고,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왜 날 낳았냐고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도 했습니다. 학생운동을 한답시고 어머니의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저 몰래 제 가방을 뒤쳤습니다. 정대협 자료집이며, 증언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런 짓하고 다니냐고....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며 엄마보다 더 오랜 세월동안 밤마다 고통에 시달려온 할머니들이 너무 가엾고, 어떻게든 돋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지만 온갖 생각이 다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말로 다 설명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고통이었습니다. 말없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우시던 어머니를 꼭 한 번 안아줘보지도 못한 제가 할머니들의 고통을 안다고 했으니...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자신의 몸속에서 키워내고, 몸이 부셔지는 고통을 참고 그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 순간만은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혼자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때까지 정성과 인내로 지켜주는 사랑...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절실히 느낀건 바로 얼마전입니다. 그것을 할머니들이 저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어머니가 되는 큰 축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아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어머니의 자식사랑도 느껴보지 못하셨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할머니들을 통해 느꼈듯이, 저의 사랑을 할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 ▶ 나는 왜 이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 일본을 깨우쳐 주소서!

최이례네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 합회)

아픈 과거를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여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지 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 국가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관심으로 아직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추우나 더우나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전쟁 반세기가 지났어도 아시아를 위한 전쟁이었다고 전쟁을 미화하고(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모금하여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조로 지급하려고 지금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95년 2월 27부터 3월 1일에 있었던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때 우리 할머니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살아남은 것은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민간모금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피를 토하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민간모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일본정부가 법적인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즉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되고, 받을 수 없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던 UN성폭력담당 쿠마라스와미의 정신대 문제 보고서에도 일본의 전쟁범죄임을 밝혔고, 국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도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국이 힘이 없어서 국권을 잃어버리고 할머니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서, 조국의 할머니들을 우리 손으로 정성껏 도와드려야겠습니다.

95년도 수녀 연합회 결의문에서 우리 여성 수도자들은 전쟁범죄의 희생자인 정신대 할머니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95년 12월 4일 명동성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갖은 적이 있었다. 그때 전국에서 모여 온 수녀들은 2000명으로 명동성당을 꽉 메웠다. 침묵시위로 대사관까지 갔고, 무라야마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편지를 대사관에 전했다. 그 후에 명동으로 돌아와서 미사, 3부에는 철야기도회를 가지는 동안 "노을에 와서 노을에 가다" 연극도중 김학순 할머니의 말씀도 들었고, 그 이후로 매주 수요시위에 수도회 별로 참석하고 있다.

96년 11월 25일에서 27일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폴란드인 에드워드 신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것을 보고 단식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안이 왔었다. 그 분은 일본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기도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정통 프란치스건 수도회 성당에서는 단식기도를 수도회 별로 하면서 27일에는 미사 후 수요시위에 참석하였다.

#### 마침기도

오늘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의 상처로 신음하는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년 역사 속에서 무서운 치욕의 순간을, 수치심과 공포에 정신대 할머니들을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고통과 치욕, 억울함과 설움을 삼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두려운 과거를 생각하기조차 몸서리쳐지는 아픔 속에서 그들은 지치고 소외되어 그들의 가슴은 한을 쌓아올린 무덤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잊혀진 역사를 외치며 저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심히 살아온 우리. 우리 모두의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깨어나 함께 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 되게 일본을 깨우쳐 주소서. 할머니들의 남은 여생에 평화를 주소서.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아자 !”

## 정신대 운동 어디까지 왔나.

이동우(미국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대표)

#### 국제사회에서 비추이고 있는 정신대 문제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발생한 중대한 정신대관련 사건을 들자면 지난해 12월 3일에 미국정부 법무성에서 발표한 「일본전범 16명에 대한 미국입국 금지조치법」에 관한 특별발표일 것이다. 2차대전시 일본의 731부대와 정신대 범죄 등에 관련 가담하여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 16명을 미국 정부의 '요 감시인'명단에 올리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거절한다는 골자로 된 이 발표는 곧 뉴스메디어를 통하여 온 세계에 알려졌다. 폭발적인 대거 국제뉴스로 등장한 이번 미정부 발표가 큰 파문을 던지는 이유는 미국정부가 공식발표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정신대 강제동원 사건을 「명백한 전쟁 범죄」로 규정짓고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계속 회피하면서 정신대 희생자에의 보상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부인해 오던 일본정부에게는 이번 미정부의 「전범규정」 발표는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신대 문제는 결코 적당히 얼버무려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인권문제의 과제임을 국제사회에 공포하고 일본정부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하겠다.

이번 발표를 직접 주관 담당하였던 법무부 법회특별수사국의 Eli Rosenbaum국장은 이 발표를 통하여 "이들 '요 감시인' 명단에 오른 일본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비인간적이고 치명적인 인간실체시험에 가담하였거나 수십만의 여성들을 「군대위안소」 운영을 통하여 일본군인들의 성노예로 강요한 일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전쟁범들은 1979년 제정된 'Holtzman 수정안'이라는 미국 법에 의해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Holtzman 수정안은 2차대전시; 독일 나치 정부와 그 동맹국에 협력 가담하여 인종, 종교, 정치적 민족차별학살 등의

잔혹행위를 한 전쟁범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이민법으로 1979년에 제정되었음.)

Holtzman 수정안제정과 동시에 1979년에 미정부 법무부에 범죄특별수사국이 설치된 후 그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Rosenbaum 국장에 의하면 6만명의 독일나치범들이 그간 '요 갑시인' 명단에 올랐고 1989년 이후 이들 중 백명 이상의 나치범 피의자의 미국입국이 거부당했다고 전한다. 이 Holtzman 수정안에 의하여 비 구라파계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을 한 Rosenbaum 국장은 2차대전 전쟁범 용의자 색출에 도움을 준 역사학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특별히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그간의 업적과 그들에게서 받은 협조에 크게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그는 "오늘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신대 희생자들과 일본 731세균부대 희생자들의 존재와 그들이 겪은 고통을 기억하며 앞으로 인류역사에서 이러한 죄악의 반복을 방지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강력히 매듭을 지었다.

미 법무부의 특별발표가 있던 12월 3일에 나는 Rosenbaum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워싱턴 정대위의 그간의 업적과 공로를 치하한다고 하면서 그는 나에게 워싱턴 포스트지의 Pierre Thomas 기자와 전화통화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Tomas 기자는 2차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신대 문제가 왜 거론되고 있으며,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왔다. 지금에 와서 정신대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늘 받는 질문으로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명백하였다. 즉 :

- 가해국 일본정부의 그간의 자료은폐와 이로 인한 자료부족으로 조사과정의 난관

- 그들의 과거를 들추는 일을 꺼리던 정신대 희생자들의 증언이 최근에 와서야 활발해진 일

- 학자, 역사연구가들의 조사, 연구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그간의 끈질긴 해명촉구운동 등을 들었다.

미 법무부 발표와 관련 워싱턴 정.대.위는 어떠한 활동을 해왔나?

최근 행사로서 워싱턴 정.대.위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워싱턴의 죠지타운 대학에서 국제 십포지움을 가졌다. 죠지타운 대학과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워싱턴 정.대.위의 세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십포지움은 학자, 역사가, 문필가 등 국제적 각계 각층인사들의 연구 논문 발표에 이은 공개토론 등의 순서로 그 막이 올라갔다. 일본의 미끼 무쓰꼬 전 수상부인의 기조 연설에 이어 정신대 희생자 김윤심씨의 증언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정신대 깃발을 높이 띄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14살의 어린 소녀로 일본군에 끌려가서 치욕과 고통의 생활을 거쳐 한에 맷한 채 생의 황혼에 서있는 한 여인의 비애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 2백명의 학자, 지성인으로 가득찬 죠지타운대학 강당은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다. 흰색 한복차림의 김윤심 할머니께서 비통의 체험담을 털어놓을 때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손수건을 계속 눈으로 가져가는 이들의 모습만이 눈에 띄었다. 진지하고 심각한 모습으로 할머니의 경험담을 경청한 청중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열띤 박수를 보내면서 그녀의 용기와 존엄성에의 경의를 크게 표하였다.

김윤심 할머니와 법무부의 Rosenbaum 국장과의 회망은 바로 그 이를후인 10월 2일에 이루어졌다. 본 정.대.위 대표일행과 법무부 수사국의 변호사들도 배석한 그 자리에서 정.대.위 최상미 부회장의 통역으로 김윤심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난 Rosenbaum 국장은 일어서서 김윤심 할머니의 고귀한 용기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노라고 하였다. 유태계인 Rosenbaum 국장이 할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한 이야기를 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어린 딸이 둘이 있습니다. 훗날 그들이 성장하면 할머니의 얘기를 꼭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오늘 지니고 계시는 용기의 반만큼의 용기라도 가지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하여 굳게 서서 싸울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주기를 무엇보다 바라겠습니다."고 하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배풀 수 있는 인간 최고의 품위와 진실된 인간모습의 표현으로 느꼈으며 내 기억 속이 오래 오래 남게 될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어서 그 다음날 10월 3일에 우리 일행은 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실의 대표들과도 회담을 가졌다. 김윤심 할머니에게는 한번 더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고통이 반복되는 시간이었으나 그 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미국무성 대표들에게는 믿기 어렵고 충격적인 증언의 내용들이었다. 백악관에서 국무성으로 파견되어 실무중인 국제여성인권문제 담당관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가? 무엇을 해드리기를 바라는가?"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미 국무성의 협조의사를 표명해 주었다. "우리가 오로지 원하는 부탁은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해주는

일, 바로 이 한가지 뿐이라"고 나는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미국정부의 일본정부에의 압력」, 이것은 1993년 동경에서 열린 '아세아 여성과 평화' 심포지움에 참석했을 때 당시 일본 사회당의 도이 다까고 당수가 내게 간곡히 부탁한 메시지였다. 도이 다까고 당수는 "일본 정부는 국내 압력에는 매우 강하나 미국등 외부 압력에는 아주 약하다"고 하면서 워싱턴으로 돌아가거든 나에게 미국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힘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바 있다.

미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에 관련하여 개입 입장을 공공연히 발표한 후 미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였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12월 4일, 5일, 6일에 걸쳐 연속하여 이 사실을 보도하며 사설로까지 다루었는가 하면 L.A. Times 는 일면의 톱기사로 다루었다. 미국 주요잡지의 하나인 U. S. News & World Report 주간지는 12월 16일 주간에 정신대 문제를 역사자료사진 및 근래의 희생자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과 함께 주요기사로 4 페이지에 걸쳐 다루기까지 하였다. 또한 그 기사를 직접 집필하였던 U.S.News의 부국장인 Mary Lord 씨가 워싱턴을 떠나오기 바로 몇 일전에 전화를 걸어 들려주던 그녀의 최근의 심경을 나흔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였다. Lord 부국장은 "날이 갈수록 정신대문제는 더욱 절실한 주제로 내 가슴에 다가오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미국에 지금 수없이 많은 긴급한 과제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으나 이 정신대 문제만큼 근래에 와서 자기 가슴속에 깊이 뚫고 다가오는 이슈가 없다고 실토를 하였다. 앞으로 일본에 Asian Holocaust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함께 일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몹시 고무적인 태도이었다.

이와 같이 근래에 와서 정신대 문제는 국제사회각처에서 중대한 인권 문제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해오고 있다. 정신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범죄 사실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고 품들바를 찾지 못한다. 미국내 많은 대학에서는 여성학, 사회학 등 많은 연구과목으로 정신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문제를 논문의 주제과목으로 택하는 학생수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 몇 일전 뉴 저지 프린스턴에서 James Hill이라는 변호사 한 분이 정.대.위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2차대전시 학도병으로 미군에 입대하여 남양군도에서 처음 보고 들은 정신대 '위안부'들의 이야기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가슴속에 깊은 충격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한다. 뉴 저지에서 워싱턴까

지 4시간여의 운전을 하고 달려온 그 노신사의 정열과 이 문제해결에의 꿈은 신념에 그만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정신대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앞으로서의 과제는?

약 4년전에 워싱تون에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우선 미국사회에 정신대에 관한 홍보와 여론조성을 일으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요과제로 요청되었다. 이 작업을 위하여 정.대.위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추진해 나갔다. 만명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3년 3월 1일 워싱턴 일본대사관앞에서 시위를 벌여 우리의 발족을 일본대사관에 알렸고 워싱턴 포스트지에 호소가와 일본수상앞으로 공개서한을 실고 정.대.위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광고를 하였다. 그 다음에 착수한 작업이 희생자들의 증언을 육성으로 수록한 '정신대'비디오 제작이었고 이어서 사진들과 자료들을 수집하여 워싱تون의 국회의사당앞에서 한달동안 정신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진 전시회는 북경여성대회에도 다녀온 후 계속하여 미주지역 여러곳을 순회전시하고 있으며 카나다에서까지 전시가 되었었다. 다음 순회 전시는 펜실바니아주의 덕킨슨 대학에서 3월 25일부터 열리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94년 6월 일본국왕의 워싱턴방문시에는 백악관앞에서 아세아계를 선두로 한 8백여명의 미주지역인들이 2차대전시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데모를 주관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공청회, 심포지움 등을 주최하면서 국제여론형성에 크게 기여를 하여왔다.

정신대문제 대책

정신대문제 촉구운동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상태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이미 고령에 있으므로 그분들이 생존해 계실 동안에 서둘러 해결을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희생자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운동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2년전에 희생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서울에 왔을 때에 열 다섯 분의 할머니를 만나뵈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 그동안 문옥주, 강덕경 두분이 돌아가시어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어 가슴이 몹시 아프다. 정신대 희생자를 돋는 운동을 위하여 정열을 쏟을 때는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이라고 믿는다.

언젠가는 우리도 유대인들의 Holocaust박물관과 같은 정신대 문제 박물관을 서울이나 워싱تون에 세워 과거 2차대전시의 일본인들의 범죄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에 와서도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인권을 멸시하는 태도로 과거의 범죄를 사과하기는커녕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자료도 내놓지 않으며 공식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이 가증적인 범죄사실을 우리는 만천하에 알려야만 한다.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앞장은

승인은 아니더라도 충실히 있어

- 19 - 노을주제로 각국노 학생 ( )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정신대 문제해결을 찾고

오늘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라고 믿기에 우리는 이 운동의 성공을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프레스터의 멘트

6월 25일 ~ 7월 25일 동안

“내일은 더욱 늦어. 할애해 나아가는 동안 끝까지 해결해야”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 반인륜적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자

국회의원 이 미 경(민주당)

’90년 11월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고, 이듬해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로 강제연행당했던 과거에 대한 공개 중언을 한 이후 본격화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民間의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등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기관, 인권기관이 일본정부 차원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책임이행을 권고한 것은民間운동의 역사상 매우 성공적인 사례이며, 국제여론이 일본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늦게나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해자들의 생활보호, 의료지원 조치 등의 지원조치를 마련했으며, 무엇보다 역사의 뒷전에 묻혀 있던 미해결의 역사적 과제를 한·일 간의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일본정부의 반역사적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한 경각심을 세계적으로 고취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정부의 거듭되는 역사왜곡과 책임회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 배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는 구호만으로는 우익의 발호와 더불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단죄할 수 없습니다

다. 이 문제의 보다 조속하고, 올바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일본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한층 다양한 대응방안과 국내·외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해 12월 미국 법무부가 취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1. 미 법무부의 ‘일본전범 입국불허 조치’가 주는 교훈

지난해 12월 3일 미국 법무성은 ‘태평양 전쟁 당시 종군‘위안부’ 동원이나 생체실험부대에 관여해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되는 일본인 16명에 대해 미국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민법’ 중 홀츠만에 의해 1978에 주도된 ‘...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여 어떤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도록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는 태평양전쟁시기에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피해 당사국들의 규탄활동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50여년이 지난 과거의 범죄가 피해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현행법으로 단죄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 의한 최대 피해국인 우리 모두에게 각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운동의 방향을 보다 다각화하고, 강화하는 사례로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보전진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에게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전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국내외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해 피해국 간의 연대가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미 법무성의 조치가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아시아지역의 피해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일본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15대 국회 개원 첫해인 지난 해 6월 우리 국회의원 270여명은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저를 포함하여 문제에 뜻을 함께 해온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정부에게 ‘위로금’강행지급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며 아시아에 인권과 평화의 원칙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결성

우선 저는 국회 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과거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관심과 뜻을 함께 하는 의원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의 결성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피해국의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과 보다 폭넓은 교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 내의 ‘입법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한-일 의원간의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입니다.

#### ◦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한 - 일 합방에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의 시기에 일본 정부, 일본군대 그리고 동맹국 등의 지휘 또는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하여 어떤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제도화하여 일본군 전범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 ◦ ‘시효부적용협약’의 가입

시효부적용협약은 196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에 ‘공소시효’가 문제되면서 피해 각국의 국내법적 조치와 더불어 채택된 것입니다. 이 협약체결의 또 다른 의미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전범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협약가입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조약가입 여부를 떠나서 영원히 시효를 정할 수 없는 국제범죄이며,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외 법률가들의 노력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외교적 분쟁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약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조약에의 가입과 더불어 우리정부와 민간단체는 전쟁범죄자 파악과 증거수집을 구체화하고 범인인도 요구와 재판을 통해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부당한 살인, 대량학살, 신체적 상해, 불법적인 자유의 박탈과 폭력에 가담한 전범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의 방안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거청산’작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진정한 목적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온국민과 세계의 양심세력이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 미군관계자 입국 금지 조치와 일본의 반응

변호사 도츠까 에츠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 머리말

미국정부 법무부는, 1996년 12월 3일 제2차 대전중에 비인도적 행위를 이유로 16명의 일본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다고 공표하였다. 입국을 금지당한 것은 「종군위안부」시설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구 군관계자와 구 만주에 주류하여 세균 병기의 개발을 하고 있었던 구 육군「731부대」의 대원들이다. 일본정부에게는 큰 외교상의 실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일본외무성이 허위를 보고 했기 때문이다」고, 일본의 월간 법률잡지 법학 세미나의 연재 「일본이 모르는 전쟁책임」(97년 2월호)에서 논했다.

### 보도의 개요

일본에서의 일본군 성노예문제의 폐스컴보도는 최근 저조했으나, 그 뉴스를 무시할 수 없어서, 거의 모든 일본의 유력 각지(4일 석간) 「731부대」·‘위안부’ 관여 구 일본군 16명 미국 입국을 금지」. 비교적 보수적인 이 회사의 보도 자세로 보면 「파격의 취급」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기사는 정보량도 풍부하고 내용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쓰여져 있다. 같은 날 석간 각지는 일본 경제신문, 도쿄신문 뿐만 아니라, 최근 「위안부는 상행위」라는 입장을 보도하고 있는 산케이신문조차 이 사건을 일면에서 보도하였다.

놀란 것은 아사히신문에서의 취급이 좋지 않았던 점이다. 「미 사법성 구 731부대원들 입국금지, 위안부 관계자 포함 16명」이라는 미즈노 다카아끼 특파원의 도쿄본사판(동일 석간4판)기사는 제2사회면에서 겨우 20줄밖에 스페이스를 얻을 수 없었다. 예전의 아사히신문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에서 상세한 보도를 했지만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작은 취급이 되어있는 것일까. 또한 아사히는 12월23일 로젠바움 미 사법성 특별조사부장과의 회견기사를 게재했다.

산케이신문, 가지야마 유키오 특파원의 「구 일본군관계자등 미국이 16명을 입국금지, 인체실험 위안부 등을 이유로」라는 기사 내용은 다른 보도와 비교에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2면에 게재된 니시오 간지씨의 코멘트, 「일본에서도 알 수 없는 문제인데, 미국이 어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매우 뜻밖이고 내정간섭이다」라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일본에서도 알 수 없는 문제」라는 말은 일본측이 말해서는 안 된다. 구 일본군이 일으킨 사건이다. 일본정부에 진상구명과 가해자 처벌의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의 증거를 소각하고 은폐했다. 전쟁범죄를 한 자를 용서해 온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하여 1993년 8월 4일 제2차 조사결과 및 코오노 관방장관 담화발표로, 구 군의 관여와 위안소 내에서의 강제적 처우를 대체로 인정하고 일정한 사죄를 하였다.

둘째로, 「국제법상의 일반 규칙으로서,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는 의무를 갖지 않는다.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권능에 속하여, 국가는 이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요꼬파 기사부로「국제법(신판)」212). 그러므로 「미국이 전쟁범죄를 범한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해도 내정간섭이 아니다」

셋째로 1945년 5월 유엔헌장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태도를 수정하여 국제적 관심사로서 유엔 등에 의한 국제적 인권보장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이며 적절한 것이다.

## 입국금지 조치의 미국정부에 의한 의의

「위안부」에 대한 구 일본군의 행위가 군사적 성 노예화라는 범죄, 특히 인도에 대한 죄라는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권위있는 NGO나 유엔 기관 등의 조사, 보고에 의해 밝혀져왔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 것이다.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미국정부의 조치는 가령 보상문제가 평화조약 및 2국간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구 일본군인의 전쟁범죄문제는 나치스 독일의 인도에 대한 죄와 같이 미해결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 일본의 태도

일본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유엔기관 등의 권고를 무시하여 국가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해 왔다.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및 대부분의 피해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7명의 피해자에 대한 민간기금 등의 지불을 1월12일에 강행하였다. 한국 정부가 백지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국민기금 정체를 철회하지 않았다. 대만에서도 반대를 무시하여 국민기금 지불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경직한 자세는 일본을 지배해 온 보수층이 공유하는, 과거의 식민지지배와 전쟁에 관한 역사인식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하, 문제점을 지적한다.

1) 일본정부는 구 일본군 성노예 범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그 어떤 사실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일본이 센프렌시스코 평화조약 11조에서 승인한 전쟁범죄의 재판 예에서도 이것이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인권침해에 관한 불처벌문제」ICJ 국제 세미나 도쿄위원회편『심판받는 일본』일본평론사, 41-51).

2) 또 일본의 전쟁범죄의 증거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경력을 갖는 오쿠노 세이스케 전 법무대신 등 최대 여당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밝은 일본』국회의원 연맹」을 결성하여 작년 6월 이후 「위안부는 상행위였다, 당시는 공창제가 허용되어 있었다」는 등, 일본제국군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종군위안부」문제를 기재한 역사교과서를 공격하고 있다.

3) 1월 24일 가지야마 관방장관은 기자단에 대해 「(젊은 사람들은) 당시, 공창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모른다. 우리들 보다 위 세대들은 종군위안부라고 해도 별로 놀래지 않는다.(공창이 된 것은)많은 경우 가난해서 돈 때문에 한 것이다. 전쟁터에 가면 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발언하였다(1월 25일 아사히신문). 1월 25일-26일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한 수좌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 항의하여 하시모토 수상은 「사죄」했다고 양국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수상은 2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보도를 부정」하여 「『초대한 손님에 대해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불쾌감을 주었다면 미안하다고는 확실히 말했다』고 하여,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 자체를 진사한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에 불쾌감을 준 것을 손님에 대한 예의로서 진사했다고 설명하였다」(2월 4일 산케이신문).

4) 가해책임자의 처벌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반인들도 겨우 이해해 온 것 같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데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라고 하는 보수층의 강한 반발이 있다. 반면 처벌을 요구하는 일본인의 목소리는 작다(2월 1일 오전 1시-5시 TV프로그램 「아침까지 생방송, 격론, 종군위안부와 역사교육」).

5) 새로운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종군위안부」문제를 기재하게 된 것은 국제적 비판의 결과이며, 일본인의 역사인식의 건전한 성장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자유주의사관 연구회」등의 보수적 민간단체에 의한 교과서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이 운동은 보도 캠페인(산케이신문 등)과 함께 보수층을 통하여 지방자치체, 국회, 정부에 대해 활발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취급하는 출판사, 저자들에 대한 공격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종군위안부문제의 교과서 기술이 「자학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군위안부」 등 일본군의 전쟁 범죄에 관한 교과서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 「종군위안부」캠페인의 중심적 존재인 후지오카 노부까즈 도쿄대 교수는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의 논점』 1997년판 문예춘추사, 586-589). 저널리스트인 사쿠라이 요시꼬씨는 「정부나 군이 기본적 정책으로서 여성들을 강제연행으로 동원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지금 시점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97년 1월 22일 아사히신문 「논단」).

## 일본은 달라질 수 있는가

일본이 한국정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그때 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1) 상기한 반교과서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론도 여러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 군인들의 신문 투서, 여성학자, 교육학자, 역사학자, 법률가들의 논문, 강연록 등(요시미 요시아끼 「역사자료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세계』97년 3월호 40-47)이 반교과서운동에 하나 하나 반론하고 있다. 피해자의 증언을 정면으로 받아들여 역사적 자료등을 발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론들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2) 최근 일본에서는 「위안부문제의 입법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쓰찌야 고켄회장)등 입법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96년 12월 10일-13일) 및 한국(97년 2월 3일-5일)의 국회의원들의 일본방문이 있었으며, 일본 국회가 활성화되었다. 민주당 및 참의원 녹색당 전 야당이 이들 방일단을 성실하게 맞이하였다.

3) 작년 6월, 일본 참의원의원 26명(공동 제안자: 모또오카 쇼지의원, 사사노 사다코의원)이 일본군 성노예문제의 진상구명을 위해,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문제 조사회 설치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심의 시간이 없어서 폐안되었다. 현재 개회중인 통상국회에 더 많은 찬동자를 얻고 다시 제출 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것이 법률화되면 현재 공개되어있지 않는 방대한 공적 자료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반 「종군위안부」운동이 일어나는 것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 「이미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정서적으로 진실을 직면 할 수 없는 것, 일본정부의 진상구명이 어중간하게 끝나버렸다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전술한 고오노 관방장관 담화에 대해 요시미 교수는 「이 속에는 누가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상처입혔는가, 라는 주어가 없습니다」고 지적한다(「지금 무엇이 필요한다」아쿠로수 96년 겨울호, 11).

그리하여 「민간업자가 주체이고 일본군은 관여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해석이 살아 남아, 「민간기금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어 진다. 입법으로서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진상구명을 할 수 있으면 이러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법적 책임문제를 해명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4) 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일본국가에 의한 잠정적인 「보상」의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하도록 양심적 국회의원에 대해 주장해 왔다. 국제법률가위원회, 한국변호사협회, ICJ도쿄세미나 등이 일본정부에 권고한 요구중에 포함되어 있는 「잠정적 지불」을 실현하기 위해 서이다. 이것은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지금까지의 국민기금정책과 달리 잠정적으로 나마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 민간인 국민기금에 의한 지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 어떤 지불도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믿어져 왔다.

일본정부 및 국민기금이 민간 지불 방식에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제안되면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의 유무를 확정적이게 하는 법안을 현재로서는 제출 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국회 관계자들 간에 지배적인 것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것은 법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본국 헌법은 조약의 해석 권한을 포함하여, 내각 즉 정부에 대해 외교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교권한을 행사하여 「조약에 의해 보상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이상, 「국회가 법률을 통 해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것은 헌법위반이다」라는 국회 관계자의 견해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 견해를 번복할 수 있는 사법 기관의 재판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판단이 없는 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잠정적 조치이면 법적 책임의 유무를 거론하지 않아도 지금이라도 국회가 입법하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지불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지불한다는 것은 민간이 범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지불해서 마땅하다는 국민기금 정책의 기본이 되어있는 사고 방식을 전환시키게 된다. 즉 보상문제가 조약에 의해 해결되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국가가 범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라는 원칙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다. 일본정부는 국제 중재를 거부하고 있으며 유엔의 권고 등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또한 국제 사법재판소의 이용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 할 때, 일본 국회에서 입법에 의해 잠정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 실현 가능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아직 공개되어있지 않다. 제안에 필요한 조건 정비, 국회관계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완성, 제출된 경우 심의 과정에서 진상구명 노력도 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계속적인 논의가 일본인들의 생각을 조금씩이나마 바꾸어 가리라는 점도 기대된다. 이러한 입법에 의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미국은 앞서고 있다. 재미일인의 전시 강제수용 피해에 대해 미국의회는 입법으로 진상구명과 보상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 “일본 전범 입국 금지 우리도 하자 !”

## 일본인 전범, 이대로 둘 것인가

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 1. 서론

#### -미법무성으로부터의 소식

“법무성은 어제 16명의 일본인들을 미국에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들은 2차세계대전 중 생체실험에 가담하였거나 수십만명의 위안부를 성노예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sup>2)</sup>

작년 12월 4일자로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지의 이 기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한일간에 티격태격하던 정신대 문제가 제3국인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건너붙은 셈이었다. 그러나 정작 충격적인 것은 50년이 훨씬 지난 이 문제가 이토록 구체적인 실정법에 의해 출입국제한조치로 취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동안 일본전범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정부조차 정신대문제는 이미 어쩔 수 없이 과거로 사라져버린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상태였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정신대 문제가 아직 살아있는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 2. 나치전범에 대한 미국정부의 조치

#### (1) 개관

2. December 4th, 1996, The Washington Post

3. 한국정부는 한 번도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신대범죄에 관한 책임자들의 처벌이나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물은 바 없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태도는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나 지식이 없었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협정에 의해 모든 청구권이 포기되었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피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미국에 피난민을 가장한 나치범죄자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미국의회는 1948년(DP법)과 1953년(RRA법) 각각 특별이민법을 개정하여 종래의 이민할당제도를 제거하고 보다 많은 이민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민간인들의 학대와 처단에 조력한 어떠한 나치의 전쟁범죄자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도같이 밀려드는 난민의 대열 가운데서 나치범죄자를 심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DP법이 만료된 1952년까지 40여만명의 유럽난민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그 가운데 약 1만명의 나치전범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되었다<sup>5)</sup>. 심지어 미국은 나치전범들의 “안전한 천국”(safe heaven)이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이 나치범죄자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국내외에서 커졌다. 유태인조직과 미국내 인권단체들의 나치색출운동과 추방운동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은 Hermine Braunsteiner Ryan 사건이었다. 1942년 폴란드 루블린에 설치된 강제수용소의 악명높은 여성경비병이었던 Ryan이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가명으로 살고 있음이 발견된 것이었다. 1973년 서독정부가 정식으로 송환요구를 하였고 미국법원도 그 요구에 따랐다. 서독에서 6년동안 재판받은 그녀는 1981년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 (2) OSI의 설치와 색출작업

미국 하원의원이었던 Holzman이 미국내의 나치전범 색출과 처벌의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1973년 세계유태인협회는 미국내 59명의 나치전범용의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조사팀을 설치하였다. 이 팀은 1977년 Martin Mendelsohn변호사를 책임자로 하는 특별소송팀(Special Litigation Unit)으로 발전하였고 다시 1979년 법무성 산하에 특별수사대(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로 개편되었다. 본격적 나치색출의 시작이었다.

1980년에 이르러 47명의 직원을 포함할 정도로 큰 규모가 된 OSI는 그 이후 나치강

4. Displaced Persons Act 제13조 및 Refugee Relief Act 제14조(a)는 “인종, 종교 또는 출신으로 인해 어떠한 사람을 기소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도운 사람”의 미국 이주를 금하고 있다.

5. David R. Gelfand, “Nazi War Criminals in the United States: It’s Never Too Late for Justic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19, 1986, p.864

제수용소의 경비병, 경찰, 나치정부관리들을 색출하고 기소하였다. Feodor Fedorenko, Karl Linnas, Ivan Demjanjuk, Hans Lipschis, Boleslaves Maikovskis, Serge Kowalchuk등이 유명하다.

### (3) 출입국관리상의 조치

미국의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8 U.S.C)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sup>6)</sup>. 제1항이나 2항에 따라 나치범죄자에 대한 입국금지와 국적박탈을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

1. 순전한 정치적 범죄가 아닌 비도덕적 비행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그러한 범행을 범하였음을 자인한 외국인

2. 사기 또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비자 기타 문서를 신청하거나 미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3. 전체주의적 정당과 단체, 또는 그 전신, 후속 정당과 단체의 회원이거나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

4. 입국시에 시행중인 법률에 의해 입국이 거부당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일체의 외국인

미국의회는 1978년 위 Holzman의원의 주도에 의해 종래의 이민법을 개정하여 나치 범죄자의 추방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나치전범들의 입국금지, 국적박탈가능성을 명백히 하였다.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나치정부, 나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의 정부, 나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나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한 외국인”<sup>7)</sup>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나치전범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국외로 추방(deportation)

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특정국가의 요청에 따라 송환(extradition)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8)</sup>.

### 3. 일본 전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 (1) 입국제한 조치의 근거와 내용

일본전범에 대해 미국 법무성이 취한 입국제한조치는 결국 아직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1978년의 Holtzman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은 당시 나치독일의 동맹국으로서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정신대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충분히 그 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아직 입국하지도 않은 일본인 전범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래 미국내 잠입하여 이미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영주권을 얻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여행중인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금지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추방당하게 된다. 물론 국적박탈조치나 그 조치에 불복하여 재판을 제기하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 (2) 향후 전망

이번의 미국 법무성의 조치는 일본인 전범에 대해서 취해진 최초의 것이었다. 이것은 OSI의 책임자인 Eli M. Rosenbaum이 이야기 하였듯이 “미국 정부가 희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잔혹한 행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 조치에 의해 입금이 금지된 일본인들은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의 지휘관들과 일본제국군대의 성노예로 수십만 아시아여성을 징용한 지휘관들 중의 일부로 보인다. 추적과 생존확인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러한 분류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군인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법무성이 입국을 제한할 일본인 전범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임이 틀림없다.

6. 8 U.S.C # 1101-1525  
7. Act of October 30, 1978, Pub. L. No.95-549, 92 Stat.2065 (8 U.S.C # 1182 a 33 1978)

8. 송환은 당사국 사이에 송환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다.

## 1.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1) 개관

미국 법무성의 일본전범 입국제한조치는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었다. 미국이 일본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싸운 교전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실제 비인도적 범죄의 피해는 별반 입지 않았다. 전쟁포로들이 겪은 학대정도가 미국의 피해규모였던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식민지통치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기간 내내 이유없는 대량 학살, 대량구금과 고문, 마을 폐괴, 정신대 및 군대 동원과 징용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그 희생을 보상받고 일본의 책임을 응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비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어떠한 권한을 국제법상 가지는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유엔인권위원회 보고관이었던 Theo van Boven이 정리한 이들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sup>9)</sup>.

1. 현금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형태로서 희생자들이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① 사실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②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③ 책임자처벌

④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9.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29 July 1992, E/CN.4/Sub.2/1992/8, pp.22-23.

⑤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⑥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돋는 요원의 훈련

⑦ 다음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방지조치

i)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 특히 민간통제하에 두는 일

ii)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iii)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iv)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v)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vi) 보안군과 법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이러한 개인의 배상청구권 가운데 금전적 청구권은 이미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형사적 처벌에 관한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범에 관한 공소시효는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적어도 형사책임에 관한 한 온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전범처벌

#### ① 시효 부적용 조약의 비준

서독의 형사법상 최고의 공소시효기간의 만기가 닥아옴에 따라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정부와 인권단체들이 그 시효의 만료를 막을 대책에 부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엔을 통하여 만들어진 조약이 바로 시효부적용조약(전체 이름은 Convention on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이다<sup>10)</sup>.

이 조약은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것을 주된

10. 이 조약의 성립배경과 과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필자, "일본인 전범, 아직도 처벌할 수 있는가", 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례신문사, 1995 참조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영원히 휴식처를 주지 않겠다는 인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다른 기회에 자세히 논구한바와 같이<sup>11)</sup> 비록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가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에 속한다는 사실, 이러한 국제범죄에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의 국제관습법으로 국제 사회와 개별국가를 구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예상될 외국간의 분쟁을 대비하여 이 조약은 정부차원에서 가입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전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길이 될 것이다<sup>12)</sup>.

## ② 전쟁범죄자 파악과 증거수집

“명단 작성은 필생의 업으로 삼아 1만명의 리스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대부분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어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 위안부 문제에 관련했던 일본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직책만 알려주시면 미법무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sup>13)</sup>

이종연 변호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 가운데 밝힌 자신의 결의이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결의를 밝혔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못할 리가 없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정신대범죄에 관련한 사람들의 추적이 힘들어지고 추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존의 가능성도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그러나 이 작업을 이미 미국 법무성이 먼저 시작하였고 미국에 영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먼저 시작하였다.

특히 OSI의 디렉터 Rosenbaum이 밝혔듯이 미국 법무성이 일본인전범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가 “미국, 일본, 기타 지역에서의 학계와 인권분야 활동가들의 엄청난 도움”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금지당한 일본 전범의 신원 파악에 학자들과 인권 종사자들의 도움이 커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영역에서 Simon Wiesenthal Center와 같은 유대인 단체와 같이 일본 전범의 당시 행적과 생존 여부, 주소 등의 확인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일본인 전범 나아가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과거 청

11. 줄고, 위의 글, 참조

12. 뿐만 아니라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향후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범논쟁의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을 전범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13. 1997.1.25자 조선일보 기사.

산 노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③ 범인 인도 요구와 재판

전범의 범죄 및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면 일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 또는 그 전범이 거주하고 있는 당사국에 대해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 사이에 송환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송환을 거부할 수 없다. 정신대 범죄는 이른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sup>14)</sup> 시효 부적용, 처벌아니면 송환(punish or extradite)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송환요청을 받은 국가는 자신이 처벌하든지 아니면 송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송환받은 전범을 기소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 경우 죄명은 뉴른베르크 전범재판소 또는 동경전범재판소의 현장에 따라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가 될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는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될 것이나 만약 이러한 재판이 현실화된다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이 경우 아이히만 등을 법정에 세운 이스라엘의 특별법이 참고될 수 있다.

## (3) 출입국의 제한

현행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입국금지자는 다음과 같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정신장애인.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14. 이 유형에 속하는 범죄로서는 해적행위, 하이재킹,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 등이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전범의 경우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 가운데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제3호에 해당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항만으로 입국을 금지시키기는 무리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을 미국의 홀츠만법과 같은 내용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즉 미국의 홀츠만법상의 조항을 참조하여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정부, 일본제국주의정부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지역의 정부, 일본제국주의정부의 지원과 협력에 의해 설치된 정부, 일본제국주의정부의 동맹국이었던 나라의 정부의 지시 또는 그 연계하에 인종, 종교,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하여 어떠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거나 참여한 외국인”이라는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①항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일본·중국·한국 등지에서 온갖 잔혹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른 일본인 전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제국주의의 점령하에 있던 만주국, 대만등지의 정부하에서 일했던 자, 일본제국주의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나치, 이탈리아의 전범들도 입국금지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범, 특히 동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친일부역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만이 아니라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 8월 29일(15)부터 정당한 민족독립운동을 진압하고 학살한 자들도 포함된다.

## 5. 결론

“731부대나 정신대범죄의 용의자들을 미국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정부는 희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음과 또 다른 잔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한다”<sup>16)</sup>

미법무성이 발표문의 말미에 천명한 문구이다. 미국정부가 그러하거늘 우리정부, 우리사회, 우리 국민은 그 희생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은 엘리 위젤의 말처럼 그 자체가 위대한 힘이다. 우리의 불행한 과거, 그 속에서 고통당한 희생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보는 일은 그러한 불행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다.

15. 한일 합방조약이 체결된 것은 1910.8.22이고 이것이 공포된 것은 같은해 8.29이다.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근현대사 사전, 가람기획, 1990, p.568)

16. Department of Justice, Immediate Release, December 3, 1996

# ◎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

강제 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들의 명예 회복과 우리 민족 자존을 소망합니다.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그룹,

한국고화여성연합회회장 이연옥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실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한국적도고회협의회(KNCC) 총무 김도와, 여성의원회 의연장 김희연

시민연대의 활동이 좋은 성과 이루어 내길 기원합니다.

대한여민의사회 회장 장명희

전쟁 끝! 여성폭력 끝! 범죄자들은 처벌!

영암초록회 회장 김혜원

세미나 개최가 좋은 결실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국고화여성연합회 회장 성봉희

정신대 할머니 온기래 둑기로 민족 자존심 회복을!

서울여자대학교 동문회